■ 수의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의2서식] <개정 2022. 7. 5.>

상시고용 수의사 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
[ ] 축산농장 [ ] 동물실험 시행기관 [ ] 동물원 [ ] 수족관	명칭	대표자 성명
	전화번호/팩스번호	개설 연월일
	사업장 주소	

상시고용 수의사	성명	한글	수의사 면허번호	비고
		한자		
	집 주소			
	전화번호		이메일 주소	
	기존 신고 여부 및 그 신고일 [ ] 있음 [ ] 없음 종전 신고일 ( )			

「수의사법」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축산농장, 동물실험 시행기관,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로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해당 축산농장등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거나 일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.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나.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다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라. 그 밖에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수의사 면허증 사본	수수료 없음

처리 절차

신고서 작성	→ 접수	→ 확인	→ 결재
신고인	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	

210㎜×297㎜[백상지80g/㎡ 또는 중질지80g/㎡]